#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300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 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 입하였으나,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 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,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담금·가산금"을 "부담금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부담금·가산금"을 각각 "부담금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23조(수익자부담금 등) ① 환경	<삭	제>			
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					
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					
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					
(流水)를 이용하여 발전사업					
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					
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)을 하					
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					
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					
전사업자의 예상 수익(댐건설					
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					
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					
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					
2에서 같다)의 범위에서 납부기					
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					
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					
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·부과					
<u>할 수 있다.</u>					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					
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					
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					
<u>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</u>					
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					
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					

산금을 징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23조의2(수익자부담금 등 결정 ・부과의 취소・변경 및 반환)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"수익자부담금등"이 라 한다)이 결정・부과된 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・부 과를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.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 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 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
- 3.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 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 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 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

<삭 제>

-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·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 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과오납(過誤納)된 수익자부 담금등이 있는 경우
- 2.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・부과가 취소된 경우
- 3.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등의 결정·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 오

제23조의3(수익자부담금 부과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<삭 제>

<u>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</u>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 에 따른다.
- 제37조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 저한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부담금·가</u>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
  - 3. · 4. (생략)
 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

세37조(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
<u>부담금</u>
1. (현행과 같음)
<u>&lt;</u> 삭 제>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

#### [별지 제1호서식]

# 대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제23조 (수익자부담금 등)	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댐 하류에 위치한 발전사업자의 발 전수익 증가가 예상 시, 그 중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납부	

#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# 1. 근거 규정

Ç	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1	제23조	〈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〉
1 세20소		제23조	제3호 :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상세 사유

- 댐건설관리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 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사유를 충족함
- (제3호) 수익자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하여 하천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의 증가된 예상 수익을 댐 건설 비용의 일부로 부과하고, 증가 수익은 전력량 등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발전량(발전 수익)은 강수량 증감, 전력수요 변동 등 불확실한 외부요인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외부요인을 고려한 정확한 예상 수익 산출은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### Ⅲ. 부대의견

O 해당사항 없음

### Ⅳ. 작성자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현 사무관	044-201-7685	anneung11@mail.go.kr